

광주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가단5188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종훈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장혜린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8.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703,6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703,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로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33,435,940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동차세 5건 합계 766,140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 합계 30,890원을 각 부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8. 16. 당시 B의 체납액은 34,232,970원이다.

나. B의 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8. 1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B, D, E, F, G이 있다.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0. 3. 3. 접수 제43101호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등기원인이 된 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체납액을 비롯하여 다수를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피고의 단독 소유인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그 실질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80.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48,100,000원으로 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7. 21. 접수 제44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3. 3.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20. 3. 4.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 지분(2/13)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의 범위

1)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8. 8. 16.까지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34,232,970원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1. 14.경 시가는 합계 139,073,550원(= 토지 125,664,000원 + 건물 13,409,550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는 1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128,073,550원(= 139,073,550원 - 11,000,000원)이고, 그 중 B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담보가액은 19,703,623원(= 128,073,550원 × 2/13,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4,232,970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 상속지분의 담보가액 19,703,623원보다 크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담보가액 19,703,623원이 가액반환의 범위가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9,703,6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위 19,703,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신

별지

목 록

1.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J 대 130.9㎡

2. [건물]

광주광역시 동구 J

시멘벽돌조스라브및시멘외층2층건주택1

건평22평6홉

외 2층건평13평4홉

부속건물

시멘벽돌조스라브층평가건

변소1동

건평5홉

시멘벽돌조스라브층평가건

창고1동

건평4홉, 끝.

